

공용차량 유류단가계약 특수조건

1. 품명 및 구매예정량

- 가. 휘발유 : 차량용 무연휘발유 21,500 ℓ
- 나. 경 유 : 차량용 저유황경유 176,900 ℓ
- 다. 등 유 : 실내등유 1,000 ℓ

2.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참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서, 대형버스 및 특수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12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위치에 영업장이 위치하고, 계약기간중 수시로 급유가 가능하여야 함.
(단, 중구 관내 주유소가 아닌 사업장이 우리구 관내에 직영 또는 위탁주유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제한 사유 : 주유를 위한 불필요한 운영을 억제하여 유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3. 특수조건

유류단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중구경리관을 발주자라 칭하고, 납품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가. 계약기간 : 2015.1.1(계약체결시)~2015.12.31

※ 발주자는 2016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 나.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으로서 실제 납품량은 계약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다. 우리구의 대형버스 및 특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차량 주유에 원

활을 기하기 위해 차량 진입 시 지장이 없도록 항상 주변을 정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유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조정(유류가격연동제)

▣ 납품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 공표하는 서울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에, 낙찰률(입찰금액/예정가격: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원단위미만은 절사

※ 단가산출 예시 : 납품일 현재 주간주유 가격 1,955원, 낙찰률 90.14%인 경우

⇒ $1955.00\text{원} \times 90.14\% = 1,762.237\text{원} \therefore$ 계약단가 ℓ 당 1,760원(원단위 절사)

마.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한 유량에 대하여 유류가격 연동제에 따른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첨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익월 10일까지 대금을 청구한다.

바.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용 유류는 주유소에서 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유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유류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전용카드 리더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유류공급시(주유시) 지정공무원에게 공급량을 확인받은 후 주유소에서 발급한 주유전용전표에 지정공무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 후 대금청구시 차량별 주유 현황(일시,유종,유량,금액 기재되어야 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가 상기 계약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추후에 불량품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반품 또는 환급하여야 하며, 불량품 납품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차. 상기내용 중 계약상대자가 의무규정을 이행치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이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카. 본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물품구매 일반조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